

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 12. 24(목)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9. 10. 14
- 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9. 10. 14
- 라. 상정일자 : 2009. 12. 18(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)
 - 제안설명 : 건설교통국장 홍준호
 - 검토보고 :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
 - 질의 및 토론
 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도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도로법」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, 안 제2조제1호).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- 동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의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과 관련한 조항의 변경에 따른 조례의 정비와 자구수정이므로 이견이 없음.

※ 도로법 개정 2008. 3. 21 / 도로법 시행령 개정 2008. 12. 31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도로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사항임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함.

5. 토론요지

- 가. 찬성 : 강문기, 노경수, 박승희, 성용기, 이재호, 이은석 위원
- 나. 반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- 해당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 : 6명)

8. 기타 특이사항

- 없음

- 붙임 : 1.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인천광역시장”으로, “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4조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(이하 “원인자 부담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도로법」 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도로”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”을 ““도로”란 「도로법」 제2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도로복구공사”라 함은”을 ““도로복구공사”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직접 손궤부분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직접 손궤부분”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“1차복구”라 함은”을 ““1차복구”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“2차복구”라 함은”을 ““2차복구”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”을 “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(이하 “원인자 부담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시장”을 “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장 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, 「도로법」 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64조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공사의 “원인자부담금(이하 “원인자 부담금” 이라 한다)” 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인천광역시장----- ----- 「도로법」 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도로” 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, 공작물,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. 2. “도로복구공사” 라 함은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도로를 1차복구와 2차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. 3. “직접 손괴부분”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. 4.(생략) 5. “1차복구” 라 함은 직접 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. 6. “2차복구” 라 함은 직접 손괴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. 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도로” 란 「도로법」 제2조에 따른 ----- -----. 2. “도로복구공사” 란----- ----- -----. 3. “직접 손괴부분” 이란----- -----. 4.(현행과 같음) 5. “1차복구” 란 ----- -----. 6. “2차복구” 란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원인자 부담금)①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(이하 “타공사” 또는 “타행위” 라 한다)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, 직접 손케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,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며, 복구비 산출을 위한 단가는 매년도 시장이 정하고 실제 포장된 단면 및 재질로 조정하여 복구비를 징수할 경우 허가권자가 산정할 수 있다.</p> <p>④원인자 부담금은 착공계 제출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은 천재·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 등이 불통·파열·누출되거나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⑤(생략)</p>	<p>제3조(원인자 부담금)①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(이하 “원인자 부담금”이라 한다)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제2항에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----- ---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)</p> <p>①(생략)</p> <p>1.~2(생략)</p> <p>3.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.</p> <p>②~③(생략)</p>	<p>제4조(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~2(현행과 같음)</p> <p>3.그 밖에----- -----.</p> <p>②~③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권한의 위임)시장은 <u>제2조의 규정</u>에 의한 도로복구공사 및 부담금의 부과 징수 사무를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군수·구청장(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)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.</p>	<p>제9조(권한의 위임)시장은 <u>제2조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